

제재내용 공시

1. 조합명 : 멩계수하식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3. 12. 21.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징계면직 : 1명, 감봉 1월 : 2명, 견책 : 2명, 경고 : 2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 사실

○ 고객 자금 업무상 횡령 등

가. 고객 자금 업무상 횡령

- 3급 강○○는 2020. 9. 14. 차주 임○○에게 어업경영자금대출 44,000천원을 취급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됨에도, 농신보 부분보증에 대한 금융기관(수협) 책임비율 채권보전을 사유로 차주로부터 현금 5,660천원을 수령하여 (농신보 보증료 238천원 정상납부 후) 5,422천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대출취급 사례금 명목으로 차주가 건네준 현금 500천원을 불법 수수함.

나. 예탁금 지급 업무 부적정

- 2급 이○○ 외 1명은 2020. 9. 14. 차주 임○○에 대한 어업경영자금대출 44,000천원 취급 후 차주의 현금 5,660천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지급청구서는 고객이 직접 작성토록 하고 직원이 청구서의 금액, 계좌번호, 성명, 인감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자 강○○가 고객이 맡긴 인감도장으로 대리 작성한 지급청구서를 수신 담당자는 확인 없이 지급처리하고 책임자는 전표에 확인 날인하는 등 예탁금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사문서 위조 및 부당행사 등

가. 사문서 위조 및 부당행사

- 강○○는 2019. 6. 3. 본점에서 취급된 임직원 전세자금 대출금 30,000천원으로 2019. 6. 4.부터 2023. 6. 3.까지 전세임대차계약을 하고 통영시 무전동 소재 다가구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2022. 5. 26.자에 전세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0천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동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함.

○ 이후 사고자 3급 강○○는 2023. 6. 2. 임직원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서, 이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는 것처럼 「전세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을 2023. 6. 4.부터 2025. 6. 3.까지로 위조하고,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계약서의 임대인 확인란에 임의 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행사하여 대출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대출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

나. 임직원 전세자금대출 사후관리 부적정

- 1급 김○○ 외 2명은 2023. 6. 2. 차주 강○○(당시 공제채권관리과 근무)에게 취급된 임직원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연장을 처리하면서,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전세(임대차)계약 해지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차주 본인이 거주하게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대출금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에도,
- 차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지 않고, 차주가 임대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제출한 전세(임대차) 연장계약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전세자금 대출 취급시(2019. 6. 3.) 제출된 최초 전세(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인감이 다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주가 대출기간 중 동 임대차 계약을 해지(2022. 5. 26.)하고 다른 거주지로 전입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출기한 연장을 부적정하게 처리함.
- 특히, 신용상무 1급 김○○은 본점 영업점장으로서 ‘임직원대출관리부’를 비치하여 대출실행 및 회수,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실을 점검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차주 강○○가 대출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점검하지 않는 등 대출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신용사업 관리 · 감독 업무 부적정

- 상임이사 최○○는 2020년 명계수하식수협이 조합감사실 수시감사에서 「예탁금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및 내부통제업무 부적정」등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최근 2년간 조합감사실에서 회원 조합에 시행한 내부통제 문서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여 사고자가 업무권한을 이용하여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 관련법규 >

1. 「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장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제3장 제108조(준용규정)
3. 「명계수하식수협 정관」제51조(임원의 직무)
4. 「명계수하식수협 직제규약」제10조(임원의 직무)

5. 「복무규정」제3조(법규의 준수) 및 제4조(성실과 공정)
6.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제1편 제47조(일반지급절차)
7.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제5편 제68조(대출용도), 제70조(대출한도 등), 제71조(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제75조(용도·자격 및 한도확인 등), 제77조(사후관리)
8. 「수협임직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